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90,000,000	35,700,000
일반회계	738,000,000	22,140,000
특별회계	452,000,000	13,560,000
공기업특별회계	259,400,000	7,782,00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0,000,000	2,100,000
공영개발 특별회계	109,400,000	3,282,00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0,000,000	2,400,000
기타특별회계	192,600,000	5,778,000
주택사업 특별회계	900,000	27,000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8,000,000	240,000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4,400,000	132,000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1,900,000	657,000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50,000,000	4,500,0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1,200,000	36,000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200,000	186,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과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590,89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